

의안 번호	2463	[울산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8. 22.(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8. 22.(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9. 8.(월)

2. 제안이유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 나. 추진근거
- 다. 위탁 필요성

- 울산 유일의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실천적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자가관리 및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

- 등록된 의원(49개소) 및 약국(72개소)에 대한 협력체계 유지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환자 조기발견·등록관리, 교육·상담 및 홍보 등 조직적 운영 필요
-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라. 위탁사무 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그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인력	면적	
태화로 95, 건강지원센터 2층	6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4)	95㎡	사무실, 교육장

바. 위탁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른 선정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 등록교육센터는 지역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명시 ○ 전문적인 지식,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이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적절함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운영 시,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수행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필요 ○ 전국 19개 등록교육센터 중 3곳(강원 동해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능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환자 현황, 교육 현황 등으로 성과 측정 가능 ○ 반기별 실적 및 예산 등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수혜대상이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및 주민으로 의료관련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민간의 역량 평가 후 위탁

4. 근거법규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2025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동의안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거법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역보건법

-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

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